

제22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2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(화)

### 2. 제안이유

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5조)
- 바.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

본 조례안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<sup>1)</sup>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금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. 11. 13.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.

나. 주요내용으로는

본 조례는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표 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	
◦ 제1조 : 조례의 목적	◦ 제10조 :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
◦ 제2조 : 조례 용어의 정의	◦ 제11조 : 연구개발 등
◦ 제3조 : 구청장의 책무	◦ 제12조 :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

1) 스마트도시법 제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제4조 : 구민의 참여와 협력</li> <li>◦ 제5조 : 다른 조례와의 관계</li> <li>◦ 제6조 : 지역계획 수립</li> <li>◦ 제7조 :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</li> <li>◦ 제8조 :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</li> <li>◦ 제9조 : 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제13조 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li> <li>◦ 제14조 : 위원의 해촉</li> <li>◦ 제15조 : 위원회의 운영</li> <li>◦ 제16조 : 수당</li> <li>◦ 제17조 : 실무협의회 구성</li> <li>◦ 제18조 : 재정 지원</li> </ul>
---	--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: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,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- 지역계획 수립(안 제6조)

: 안 제6조는 구청장에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에 대해 규정

- 정보시스템 연계·통합(안 제9조)

: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,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·통합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
이는 수집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익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.

-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2조~제16조)

: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·심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스마트도시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에 따른 자문단 회의 및 간사, 수당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<sup>2)</sup>에 따라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

본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

---

2)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주요 제정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, 지역계획 수립,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 및 활용, 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운영,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,

본 제정안은 우리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, 조례제정의 필요성, 내용의 정당성,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붙임 1. 관련 법령 1부.  
2. 비용추계서 1부.

##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454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스마트도시"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·정보통신기술 등을 융·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.

1의2. "국가시범도시"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.

2. "스마트도시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·교통·복지·환경·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3. "스마트도시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

나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,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

다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라.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"스마트도시기술"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.

5. "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·제어·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
6. "스마트도시건설사업"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건축물, 공작물 등을 설치·건축·구축·정비·개량 및 공급·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

6의2. "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"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.

7. "스마트도시산업"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8. "혁신성장진흥구역"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 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9. "스마트혁신사업"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제공·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10. "스마트실증사업"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시험·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11. "스마트규제혁신지구"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 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12. "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

거나 신기술·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·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 대상)**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의 택지개발사업
2. 「도시개발법」의 도시개발사업
3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혁신도시개발사업
4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의 기업도시개발사업
5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
6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7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의 도시정비·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2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
5.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6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7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8.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9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(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)
10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도시·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
⑥ 삭제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**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

·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.

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9조의2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)**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·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9조의3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)**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

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9조의5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등)** 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스마트도시 관리·운영시설"이라 한다)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·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·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21조(개인정보 보호)**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, 이용, 제공, 보유, 관리 및 파기(이하 "취급"이라 한다)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.

**제27조(연구·개발 등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·지원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이전·보급
2.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·개발
3. 삭제
4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

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3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본 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홍보디지털과 스마트도시팀 윤지영
연 락 처	2627 - 1547